

교섭노동조합 확정 및 교섭위원 선임요구 공고

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교섭위원 선임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3일

고령군수



1. 교섭 노동조합

연번	노동조합명	대표자	비고
1	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고령군지부	강현호	

2. 교섭위원 선임요구

- 선임기간: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
- 선임내용: 10인 이내의 교섭위원 선임 후 서면으로 통보
 - ※ 교섭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, 교섭위원 인적사항 및 소속 노동조합, 통보일자 포함
- 통보방법: 직접 제출, 우편, 팩스 중 택일(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)
- 제출처: 고령군청 총무과 직원복지팀
(주소: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/ FAX 054-950-6089)

3. 참고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직원복지팀(☎054-950-606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